

오산시의회 공고 제2019-10호

## 오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

「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3월 1일

오산시의회의장

###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명철 의원 발의)

#### 1. 제안이유

-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「근로복지기본법」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, 조례입법의 반복규정 금지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일부 조항을 개정 및 삭제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골자

- 가.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, 필요시 「근로복지기본법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10조 제목 및 제1항).
- 나. 위탁관리에 관한 “절차와 방법”은 중요한 사항으로써 규칙에 위임할 사항이 아니므로 「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」를 준용하도록 정함(안 제10조제4항).
- 다. 「근로복지기본법」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“노동 관련 단체에 우선 위탁”에 관한 내용과 수탁자의 자격을 별도로 정한 조문을 삭제함(현행 제10조제1항단서 및 제11조 삭제).

#### 3. 조례안 : 붙임

#### 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19년 3월 7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 - 우편번호 : 447-701
 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 - 전 화 : 031)8036-8023, · 팩 스 : 031)375-2875
  - 전자메일 : pk1121@korea.kr

##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 례 명 :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견제출자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

##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제목“(위탁관리)”를“(운영위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“효율적으로 관리하기”를 “직접 관리 운영하되, 그 효율적 관리를”로, “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”을 “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”로, “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”을 “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복지관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」에 따른다.

제11조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복지관 운영위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복지관 운영의 위탁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위탁관리) ① 시장은 복지관을 <u>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노동 관련 단체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 <p>④ 그 밖에 위탁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11조(수탁자의 자격)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 요건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 &lt;개정 2016. 4. 18&gt;</p> <p>1. 근로자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</p> <p>2. 노동관련 단체나 노동관련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</p> <p>3. 그 밖에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</p>	<p>제10조(운영위탁) ① ----- 직접 관리 운영하되, 그 효율적 관리를 --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-----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--. &lt;후단 삭제&gt;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복지관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」에 따른다.</p> <p>&lt;삭제&gt;</p>